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www.110.go.kr)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을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 이용 |

- 전화·문자상담 : 국번없이 110
- 화상수화·채팅상담 : 110홈페이지, 스마트폰 앱("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SNS상담 :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 예약상담 |

- 110홈페이지에 연락처와 원하는 시간을 남겨주시면 상담사가 전화를 드립니다.

| 상담 시간 |

-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등 다양한 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민원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총 12개국 언어로도 민원 신청 가능

참여 방법 |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모바일 기반의 소통 창구입니다.

| 주요 특징 |

- 국민의 생각을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완성
- 다양한 생각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한눈에 쉽게 확인

| 참여 방법 |

-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개인·단체·행정기관 누구나 참여 가능



권익위 소관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행정심판법」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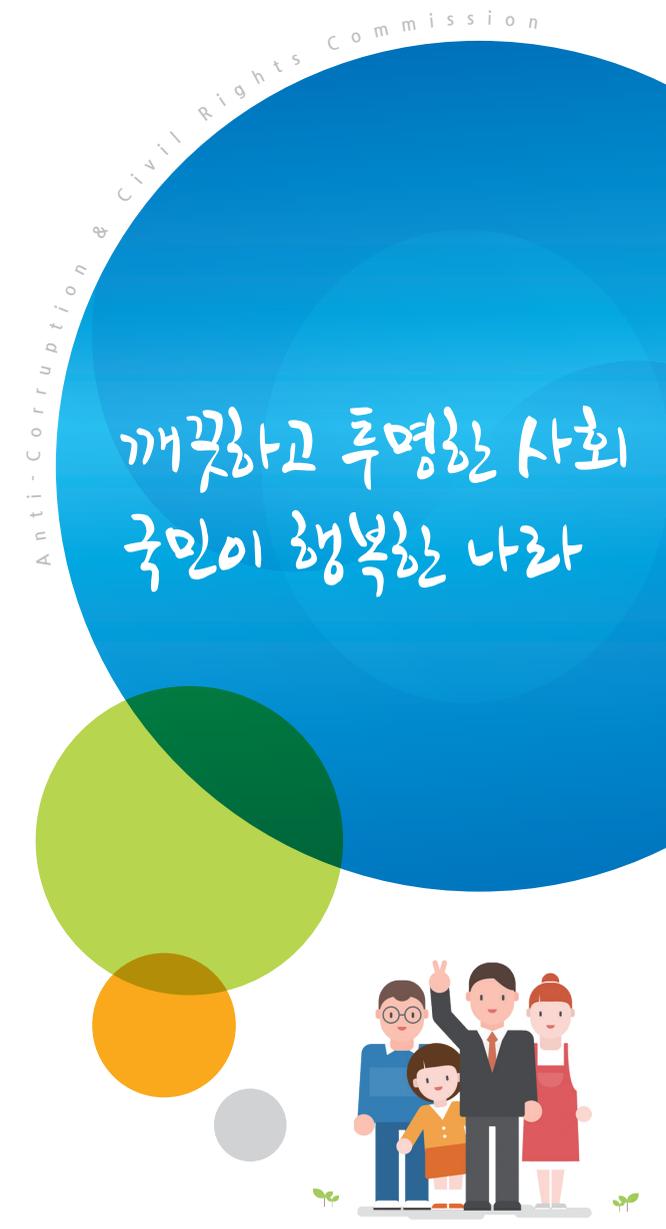


권익위 공식 SNS 계정

- 블로그 | <http://blog.daum.net/loveacrc>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loveacrc>
- 트위터 | <http://twitter.com/loveacrc>
- 유튜브 | <http://www.youtube.com/acrc0229>

위치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서울종합민원사무소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청렴연수원 (2867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7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회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비전 국민권의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미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구제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킵니다.

권익위가 하는 일

국민소통	국민의 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
고충처리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
부패방지	청렴한 공직문화 및 사회풍토 조성
행정심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국민권익을 구제
제도개선	고충·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드립니다”

정부의 최종 고충민원처리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고충민원 처리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조사·처리

이동신문고 운영



고충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

기업고충 해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기업운영 관련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

현장조정



다수인이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 당사자들 간 입장을 조율하여 갈등 해결

고충민원 신청

개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법인·단체 등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인터넷 : www.acrc.go.kr(국민권익위원회), www.epeople.co.kr(국민신문고)
- 모바일앱 : 국민신문고 앱(“민원신청”)
- 전화상담 : 110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팩스 : 044-200-7971

“부패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합니다.”

-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교육 등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 ▶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제거
-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접수, 사실 확인 후 조사·수사기관 이첩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직접 조사, 위반자 징계 등 조치 요구
-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처리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아동학대, 불량식품 제조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위반한 행위 (금품·향응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알선·청탁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허위·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

신고

- 인터넷 : www.acrc.go.kr(권익위 홈페이지),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 모바일앱 : 부패·공익·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앱
- 전화상담 : 110, 1398(일상고발)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부패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포상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청렴연수원(www.acrc.go.kr/edu/)

-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사이버교육과정(acti.nhi.go.kr) 운영
- 청렴콘서트 등 청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국민 참여 청렴프로그램 운영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습니다.”

행정심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을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 대상

- 인·허가 및 면허·자격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행정심판 청구방법

-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 홈페이지 접속→회원 가입→청구서 작성→증거서류 첨부→청구 완료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기타 연락처

- 전화상담 : 110
- 팩 스 : 044-200-7951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제도개선 추진절차

1 과제 선정

정부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민원, 제안 등)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합니다.

※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생각함, 110콜센터,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사건, 행정심판 사건,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발굴

2 문제점 조사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합니다.

3 개선방안 마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4 의견수렴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현행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5 제도개선 권고

최종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합니다.

6 이행점검

제도개선 방안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합니다.